



박 건 우
고려의대

치매와 관련된 법적 문제

최근 치매오진 및 위양성 치매와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많아짐



- 가성치매(pseudodementia)인데 치매약 처방
- 치매인데 치매약을 처방하지 않은 경우
- 약물 부작용에 대한 평가 및 처치 미흡
- 이상행동심리증상에 대한 평가 및 처치미흡

✓ 치매진단 및 치료에 대한 연수교육

치매노인 재산보호 법적장치 유명무실...SBS '그것이 알고싶다' 피해사례 분석

파이낸셜뉴스 | 기사입력 2006-02-15 19:51 | 최종수정 2006-02-15 1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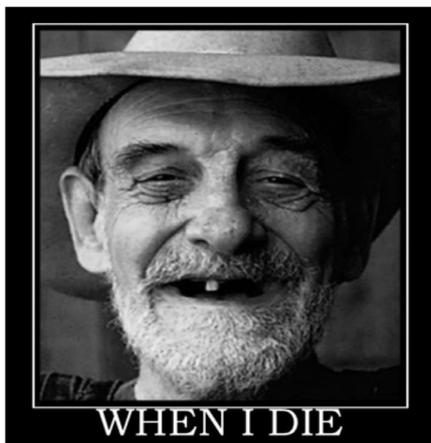


강영찬씨(가명)와 형제들은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강씨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6억원대의 땅을 물려주는 대신 장학사업에 쓸 것을 바랐고, 자식들은 그 뜻을 따르려고 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년이 되도록 부친이 남긴 땅과 관련해 아무런 세금이 나오지 않자, 경위를 알아보던 강영찬씨는 면사무소에서 기가 막힌 얘기를 듣는다. 아버지의 땅이 이미 형수 앞으로 넘어갔다는 것. 치매를 앓았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한 달 전, 잠시 아버지를 모신 형수에게 모든 땅을 이전해 버린 것이었다.

장학사업을 원했던 아버지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재산을 되찾으려 하고 있는 강영찬씨는 형수가 의사능력이 떨어지는 치매상태의 아버지를 끌고 가 재산을 빼돌렸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서류상 문제가 없고 당시 아버지가 치매 상태였음을 입증하기가 힘든 상태다.

치매환자의 재산권



- 치매진단 이후 유언내용에 불만인 자녀의 소송

- ✓ 치매진단의 근거 기록
- ✓ 유언능력에 대한 평가
- ✓ 성년후견제도 활용 권고

민법에서 정한 유언방법 5가지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 자필유언내용,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 도장
- 무효인 경우, 발견되지 않는 경우

2.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공증인과 2명의 증인 앞에서 유언을 말하고, 공증인이 공증함

3.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은 있지만 유언 내용을 생전에 비밀로 하고 싶은 경우

4.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유언자가 질병 등으로 목숨이 위태로울 때 2명의 증인 앞에서 유언

5. 녹음에 의한 유언

- 문맹자나 글로 유언장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유언능력

치매환자인 아버지가 내린 유언의 효력은?

- 치매가 있더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제한적인 의사능력이 있다면 유언은 효력이 있음.
 -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유언을 하는지 여부는 공증담당변호사와 증인 2명이 확인함 (자신의 인적 사항, 재산보유내역, 재산을 받을 수증자)
- 만일, 유언 당시 치매증상이 심각하여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공증담당변호사와 증인 2명이 진정한 의사여부를 인정할 수 없게 되어 유언공증이 이루어지지 않음.
- 만일 이미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어 있다면 의사능력이 회복되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확인

치매환자가 유언을 할 때 가족이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요구

성년후견제도

-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
-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로,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본인 혹은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은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함

구분	과거의 후견제도	성년후견제도
용어	금치산/한정치산의 부정적 용어	부정적 용어 폐지 / 성년후견제
대상	중증 정신질환자에 국한	정신장애 및 치매노인 등 고령자까지 확대
범위	재산행위 치중	의료, 요양 등 복지영역까지 확대
후견인 선임	사전 순위 규정 (배우자, 직계혈족)	가정법원이 상황을 고려하여 선임
본인의사	본인의사	후견 심판시 본인의사를 청취
감독기관	친족회	가정법원이 선임한 후견감독인
후견인 자격	자연인 1인만 가능	복수 또는 법인 후견인 가능
후견계약	본인결정 불가능	본인이 후견인과 내용 결정 가능

성년후견제도

임의후견

- 장래 정신기능 약화에 대비해 스스로 후견인을 정하는 것을 말함

법정후견

- 성년후견: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는 경우로 대부분의 조력을 받음.
- 한정후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로 일부분에 대해 조력을 받음.
- 특정후견: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사무에 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

(네이버 시사사전)

-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이 나 동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됨
- 또한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의료, 재활, 교육 등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결정을 할 수 있음
- 후견인은 후견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음.
- 공공후견인을 원할 때는 치매안심센터나 한국치매협회에 문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년 제정, 2008년 시행
2009년, 2011년 개정

제 1 조(목적)에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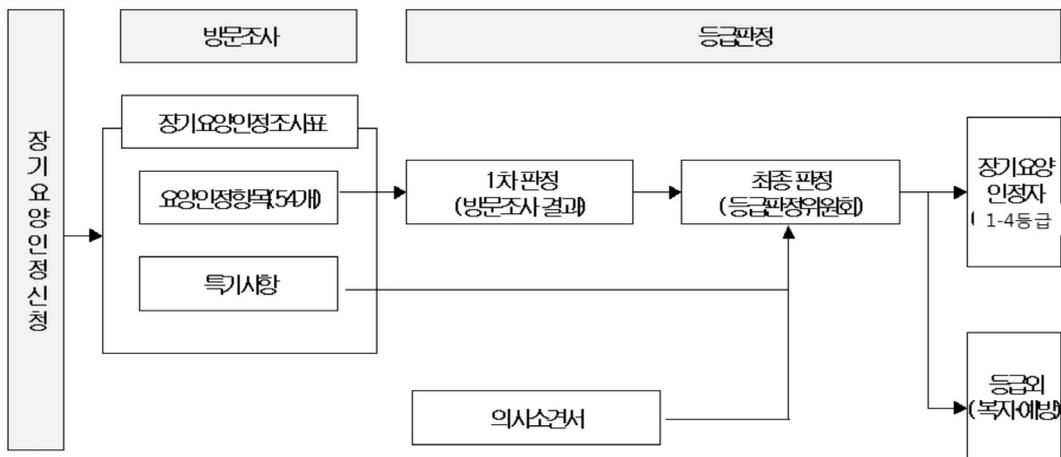
“노인 등”?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제 23 조 (1) 재가 급여, (2) 시설 급여, (3) 특별현금 급여로 구분

노인의료복지 시설 등에서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이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장기요양보험 이용절차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치매특별등급 신설 (00일보, 2014.2.12)

- 올해 7월부터 거동에는 큰 불편이 없지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가벼운 치매를 앓는 노인들도**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경증 치매를 앓아 일상생활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노인과 가족들을 위해 '치매 특별등급'을 만들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뇌혈관 질환이나 중증 치매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1~3등급(최소 51점 이상)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월 87만8900~114만600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주·야간 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요양보호사 방문 돌봄을 이용하거나, 간호사의 방문 간호를 받는 서비스 등이다.
- **앞으로 치매 특별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이 생기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노인 약 5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다.**

I. 등급체계 개편

Ⓢ I-2. 등급체계 개편 및 치매특별등급 도입(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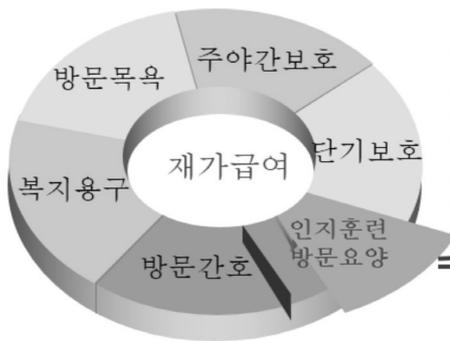
현 등급체계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외 A	등급외 B	등급외 C	
요양인정점수	95	75	51	45	40		
등급체계 개편안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급외 A	등급외 B	등급외 C
요양인정점수	95	75	60 점	51	치매 특별 등급 (45)	인지등급	40

- 등급체계 개편방안
- 1등급 ~ 3등급 → 4등급 체계로 전환
- 등급외자 중 인지기능저하(치매)로 인하여 장기요양을 필요로 한자 → 치매특별등급

page 45

II. 치매특별등급 실시 모형 개발

치매특별등급 인지훈련방문요양



인지기능유지형 보호서비스

- 치매특별등급자에게는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최대한 잔존능력을 유지, 향상 시키도록 함
- 치매 약물관리, 치매가족에 대한 보호방식 정보제공

인지훈련프로그램

- 치매특별등급(치매경증) 인지기능 악화 예방 및 개선 : 인지기능(지남력, 연산력,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구별력) 활성화 기억력 훈련, 운동, 수단적일상생활수행능력 향상 프로그램
- 원예치료, 미술치료, 놀이치료, 운동치료, 회상치료, 기억력 향상 학습지, 수단적일상생활을 함께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장보기, 요리활동, 화단 가꾸기, 계산하기, 전화하기, 다림질 등)포함

page - 16

인지등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8. 7. 1.]

제 17조

④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수급자(이하 "1~5등급 치매수급자"라 한다.) 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 "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I 의사소견서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1,396,200	1,241,100	1,189,400	1,085,900	930,800	517,800

	분 류	금액 (원)
의사소견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35,57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22,200
방문간호 지시서 (1회당)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18,920
		59,640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5,030
		10,850

page -

의사소견서 작성의 핵심 포인트

치매진단의 정확도

치매가족 간병부담 평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의 사 소 견 서 (5등급용)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담당의사가 적지 않습니다 (제1쪽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	-----	------	------------

※ 담당의사는 소견서 내용에 빠짐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하는 []에 √ 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본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주 소	(전화번호)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드의 +는 하위분류포기함)	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1-1.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0
	1-2. 만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1
	1-3.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2
	1-4.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9
	2. 혈관성 치매	[] F01
	2-1. 급성발병의 혈관성 치매	[] F01.0
	2-2. 다발-경색 치매	[] F01.1
	2-3. 피질하 혈관성 치매	[] F01.2
	2-4. 혼합성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	[] F01.3
	2-3. 기타 혈관성 치매	[] F01.8
	2-3. 상세불명의 혈관성 치매	[] F01.9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3-1. 피크병에서의 치매	[] F02.0
	3-2.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서의 치매	[] F02.1
	3-3. 헌팅톤병에서의 치매	[] F02.2
	3-4. 파킨슨병에서의 치매	[] F02.3
	3-5.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에서의 치매	[] F02.4
	3-6. 기타 특이 질환에 연관된 치매	[] F02.8
	4.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치매유병자 중 상기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급판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뒷면의 인지기능 저하 및 일상생활 장애에 대한 사항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쪽 뒷면)

1. 치매 진단

가. 치매 진단일 : 년 월 일
 나. 6개월 이상 치매진료여부: [] 예 [] 아니오
 다. 치매약물치료 여부 : [] 예 [] 아니오

라. 인지기능검사 소견

환자의 교육수준:

[] 문맹 [] 무학이나 글을 읽을 수 있음 [] 1~ 6년 [] 9~12년 [] 12년 이상

1) MMSE: ()/30점

2)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또는 CDR(Clinical Dementia Rating):()

반드시 MMSE 및 GDS(또는 CDR)는 원본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함

마. 아래 검사는 기존 검사자료가 있는 경우만 작성

1) 우울점수: GDS (Geriatric Depression Score) ()/30점 또는 ()/15점

2) 신경심리검사(SNSB, CERAD, 기타) (자료첨부 여부: [] 예 [] 아니오)

3) 뇌영상 소견 (자료첨부 여부: [] 예 [] 아니오)

(가) MRI 소견 _____ 검사일: 년 월 일

(나) CT 소견 _____ 검사일: 년 월 일

(다) 기타 영상 _____ 검사일: 년 월 일

2. 인지기능 감퇴로 인한 장애

가. 기억력 감퇴로 인한 장애 (/8점)

	없음 (0점)	주 1-2회 (1점)	주 3회 이상 (2점)
밥 먹은 것을 잊어버려 계속 먹으려고 한다	[]	[]	[]
방금 전에 했던 질문을 계속 반복한다	[]	[]	[]
집 전화번호와 주소를 기억하지 못 한다	[]	[]	[]
약 먹는 것을 잊어버려 또 먹거나, 안 먹는다	[]	[]	[]

나. 시공간능력 감퇴로 인한 장애 (/8점)

	없음 (0점)	주 1-2회 (1점)	주 3회 이상 (2점)
스스로 집을 찾아오지 못한다	[]	[]	[]
익숙한 도로에서도 길을 잃고 실종 된다	[]	[]	[]
집안에서도 화장실을 찾지 못한다	[]	[]	[]
좌, 우 구분을 못하고 자주 넘어진다	[]	[]	[]

3. 일상생활기능 감퇴로 인한 장애 (/8점)			
	없음 (0점)	주 1-2회 (1점)	주 3회 이상 (2점)
대소변을 바닥에 보거나 만져서 여기저기에 묻힌다	[]	[]	[]
목욕, 세수, 양치질을 혼자하지 못하고, 항상 도와주어야 한다	[]	[]	[]
옷을 혼자 입거나 벗지 못한다	[]	[]	[]
젓가락질을 하지 못하며, 반찬과 밥을 골고루 먹지 못해 도와주어야한다	[]	[]	[]

4. 이상행동심리증상으로 인한 장애 (/16점)			
	없음 (0점)	주 1-2회 (1점)	주 3회 이상 (2점)
밤 동안 잠을 안자고 소리 지르거나 이상 행동을 보이는 일이 지속된다	[]	[]	[]
옷을 갈아 입히거나 목욕시킬 때 할퀴거나 때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이 지속된다	[]	[]	[]
하루 중일 집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배회증상이 지속된다	[]	[]	[]
망상이나 환각 증상으로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다	[]	[]	[]
고집이 세지고 심하게 거부해서 식사나 약을 복용하지 않는다	[]	[]	[]
하루 중일 기분이 처지고 무기력해서 움직이려하지 않는다	[]	[]	[]
보호자와 떨어져 있으면 매우 불안해하고 화를 낸다	[]	[]	[]
상대방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한다	[]	[]	[]

5. 가족 부담 및 사회적 환경 (/8점)

	없음 (0점)	주 1-2회 (1점)	주 3회 이상 (2점)
주보호자 없이 집에서 혼자 지낸다	[]	[]	[]
주보호자가 하루에 8시간 이상 보살펴야한다	[]	[]	[]
주보호자도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다	[]	[]	[]
주보호자의 도움이 없으면 외출이 불가능하다	[]	[]	[]

6. 권장되는 치매특별요양서비스 (특히 필요성이 높은 것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간 또는 야간보호

[] 방문요양

[] 방문간호

[] 단기보호

7. 그 밖의 특기사항

※ 치매특별등급 요양이 필요한 그 밖의 특기 사항을 적고 검사자료 등을 추가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결론

1. 치매로 인한 법적 문제의 이해
 - 유언
 - 성년후견제도
2. 초진 및 진료시 치매진단 근거를 명확히 기록
3. 치매등급관련 의사소견서 작성요령 숙지